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
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
2019. 12. 30(월) 10:20

제220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

검 토 보 고 서

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

(복지교육국 소관)

복지건설위원회

전문위원 추병수

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(안) 검토보고서

1. 제안이유

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(안)을 편성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

2. 관련근거

○ 지방자치법 제130조(추가경정예산)

3. 추경예산안 편성규모 [총괄]

□ 예산(안) 규모 총괄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최종예산	기정액					제3회추경(안) (명시이월)
		소 계	당초예산	제1회추경	제2회추경	간주처리	
계	**558,929,626**	**558,929,626**	**461,174,956**	**3,087,194**	**45,878,546**	**48,788,930**	**(39,127,144)**
일 반 회 계	540,757,496	540,757,496	448,064,593	3,087,194	43,396,796	46,208,913	(37,454,226)
특 별 회 계	18,172,130	18,172,130	13,110,363	0	2,481,750	2,580,017	(1,672,918)
의료급여	545,816	545,816	458,846	-	71,582	15,388	-
주민소득	843,714	843,714	461,580	-	382,134		-
주 차 장	16,782,600	16,782,600	12,189,937	-	2,028,034	2,564,629	-

3. 검토의견

○ 2019년 제3회 구 전체 추가경정예산안의

▹ **예산 최종 규모는 5,589억 2,962만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당초예산 4,611억 7,495만원과 제1회 추경 30억 8,719만원, 제2회 추경 458억 7,854만원, 간주처리 487억 8,893만원임.**

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기정액에 대비하여 변동이 없으며

▹ 금회 제출된 구 전체 명시이월액은 총 46건 391억 2,714만 4천원이며 복지건설위 소관 명시이월액은 총 26건 210억 8,378만 5천원임.

(복지교육국 14건 11,903,041천원 도시환경국 6건 2,137,803천원

안전건설국 3건 1,967,478천원, 미래발전추진단 3건 5,075,463천원)

○ 2019년도 복지교육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 내역

(단위 : 천원)

부 서 명	세 부 사 업 명	2019 예산액	다음연도 이월액	이월사유
합 계 : 4개 부서 / 14건		**14,254,541**	**11,903,041**	
복 지 정 책 과 (1건/9,236천원)	주민과 함께하는 보훈회관 건립	28,000 [구 28,000]	9,236 [구 9,236]	**[연도 내 지출 불가]** 보훈회관 건립에 따른 임시이전 이사 및 철거비용으로 보훈회관이 `19. 12. 준공 예정이므로 `20. 1. 이후 사무실 이전 예정
어르신장애인과 (3건/2,388,243천원)	금천구 시니어클럽 운영	216,000 [특 166,000] [구 50,000]	122,243 [특 122,243]	**[집행시기 미도래]** 사업기간 `19.10. ~ `20.7.인 사업으로 금천시니어클럽 시장형 사업장 조성(`20.7.준공) 예정
	금천어울림복지센터 건립	1,999,000 [특 1,999,000]	1,999,000 [특 1,999,000]	**[집행시기 미도래]** 2019. 상반기 특교금 교부되었고 공사기간 `19.2. ~ `20.5.인 사업으로 명시이월 후 예산 집행
	경로당 신설	462,000 [구 462,000]	267,000 [구 267,000]	**[연도 내 지출 불가]** 시흥4동 경로당 `19.12. 매입, 독산2동 경로당 대상지 확보 중으로 경로당 2개소(시흥4동, 독산2동)에 대한 리모델링 비용을 이월하고자 함.
여 성 가 족 과 (4건/2,365,385천원)	한솔키즈빌 어린이집 매입	1,944,000 [국 360,271] [시 1,583,729]	317,540 [국 55,000] [시 262,540]	**[연도 내 지출 불가]** 한솔키즈빌어린이집 민간매입(`19.8.) 후 구립솔지어린이집 폐지 및 통합 운영 됨(`19.12.)에 따라, 학부모 설명회 및 아동 전원조치 후 `20.2. 개보수 공사 시행 예정

부 서 명	세 부 사 업 명	2019 예산액	다음연도 이월액	이월사유
	e편한세상 국공립 전환	240,000 [국 60,000] [시 180,000]	60,000 [시 60,000]	**[연도 내 지출 불가]** `19.11.준공으로 입주자 대표회의가 미구성되어 장기수선충당금 전액을 이월
	구립금주어린이집 대체신축	1,980,000 [국 457,628] [시 1,522,372]	1,980,000 [국 457,628] [시 1,522,372]	**[집행시기 미도래]** `19. 하반기 정밀안전진단결과 (D등급판정) 이후 '19.11.28.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심의결과 통보, 공사기간이 `20.5. ~ `20.12. 이므로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함
	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구축사업	10,000 [시 10,000]	7,845 [시 7,845]	**[연도 내 지출 불가]** 1인 가구 사회적관계망 구축사업은 하반기 시 공모사업으로 사업기간이 `19.10.~`20.2.이므로 연도 내 집행 불가하여 이월하고자 함
교 육 지 원 과 (6건/7,140,177천원)	금천문화복합시설 건립	4,964,200 [시 100,000] [구 4,864,200]	4,855,836 [구 4,855,836]	**[연도 내 지출 불가]** (가칭)금천행복문화파크 건립 토지매입비로서 연립 24가구 소유주와의 매매협의 지연 등으로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고자 함 (사업기간 : `19.3.~`23.3.)
	금천형 과학관 조성·운영	730,000 [특 730,000]	730,000 [특 730,000]	**[연도 내 지출 불가]** 사업대상지인 舊 시흥2동 주민센터(무한상상스페이스) 1층에 입주한 적십자사봉사회 사무실이 `20. 6. 이전예정으로 리모델링 및 탐구체험관 조성 공사는 입주단체 이전 후 추진 예정
	지역돌봄사업 추진	172,341 [국 64,341] [시 99,000] [특 2,000] [구 7,000]	77,341 [국 29,341] [시 44,000] [특 2,000] [구 2,000]	**[연도 내 지출 불가]** 우리동네키움센터 금천1호점 설계 및 시공 지연으로 개소식이 `20.3. 예정
	나래품 방과후학교 운영	75,000 [특 43,000] [시 10,000] [구 22,000]	43,000 [특 43,000]	**[집행시기 미도래]** 서울시교육청 온종일돌봄체계 구축 시범사업 기간이 `19.11. ~ `20.6.이며, 나래품방과후학교 운영방식이 직영에서 위탁 운영으로 변경됨에 따라 위탁업체 선정(`20.2.) 후 사업 진행 예정
	금천 마을돌봄교실 운영	34,000 [특 34,000]	34,000 [특 34,000]	**[집행시기 미도래]** 서울시교육청 사업 진행일정 (`19. 11.~ `20. 6.)이며, 포근센터 연계사업으로 포근센터 위탁체결 후 재협약 및 관련 프로그램 진행계획임
	금천형 진학진로 지원센터 조성	1,400,000 [특 1,400,000]	1,400,000 [특 1,400,000]	**[연도 내 지출 불가]** `19.12.23. 특별교부금이 교부 결정되어 연도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고자 함. ※ 사업기간 : `20.1.~`20.10.

- **총 4개 부서 14건, 119억 304만 1천원이며,**

『복지정책과(1), 어르신장애인과(3), 여성가족과(4),

교육지원과(6)』

- 먼저 복지정책과는

· 보훈회관 건립에 따른 임시이전 이사 및 철거비용 923만 6천원이 연도 내 집행 불가하여 이월하는 것이며,

- 어르신장애인과는

· 금천시니어클럽 사업장 조성 등 3건 23억 8,824만 3천원이 명시이월되며 당해연도 내 공사 또는 리모델 비용 집행 등이 연도 내 불가하여 이월

- 여성가족과는

· 한솔키즈빌어린이집 개보수 등 4건 23억 6,538만 5천원이 명시이월되며 2020년까지 공사 기간이 진행되어 이월하며

· 1인 가구 사회적관계망 구축사업은 하반기 시 공모사업으로 연도 내 집행 불가하여 이월하고자 함

- 교육지원과는

· 금천행복문화파크 토지매입비 등 6건 총 71억 4,017만 7천원이 명시이월되며

· 추진 사업의 지연 및 공사 기간의 연장 등으로 인하여 이월하고자 함

○ 복지교육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들은 **「지방재정법」 제50조제1항**의 세출예산의 이월 규정에 따라 연도내 사업추진이 어려운 사업들로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다음연도에 명시이월함이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됨.

관련 법령

▢ **「지방자치법」** [시행 2017. 7. 26.] [법률 제14839호, 2017. 7. 26., 타법개정]

제130조(추가경정예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② 제1항에 관하여는 제127조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.

▢ **「지방재정법」** [시행 2019. 4. 17.] [법률 제15803호, 2018. 10. 16., 일부개정]

제45조(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)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(追加更正豫算)을 편성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,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.

1. 시·도의 경우 국가로부터, 시·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·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
2. 시·도의 경우 국가로부터, 시·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·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·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[전문개정 2011.8.4.]

제50조(세출예산의 이월)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·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(事故移越費)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③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필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할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 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. [전문개정 2011.8.4.]